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74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별, 과징금 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수취거절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 가. 과징금 부과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AUM Invest 외국 자산운용사	공매도 제한 위반	과징금 4,800,000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 2. 과징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문의 : 아래 담당자),

상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공고일로부터 14일 후)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이재현 사무관(☎02-2100-2605)

증권선물위원회